하도급대금 어음 · 대물변제 "뚝"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 해양항만 · 항공)과 공사 ·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불법 ·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라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편집자 주]

국토부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대금 미지급,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방청 등 발주자가 직접 나서서 확인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43,000여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어음만기 현황('07년)

기간	비율(%)
30이 이하	6
30~60일 이하	29
60일 초과	65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 ·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하였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이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 · 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리 · 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하여,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 거래가 투명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도입 전 · 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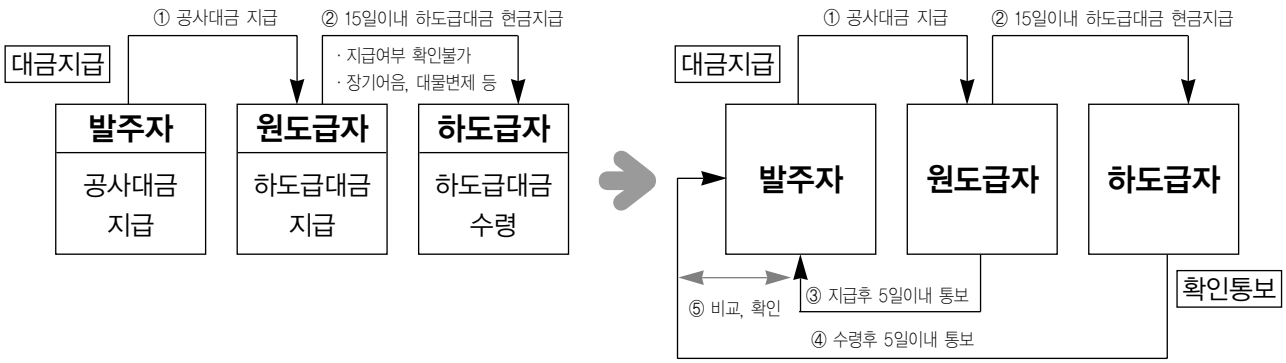

Ⅱ.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제도운영 현황

□ 적용대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 모든 건설공사

○하도급공정거래법(제2조제2항)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이상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위탁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건산법제34조)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만기일

○단,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어음발행 조건 및 지급기간 초과시 구제수단(하도급법)

①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할 것

②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을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 동안의 할인료를 하도급자에게 지급

③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는 이자지급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1항)
-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공공기관)
- 원도급공사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 원도급자 파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미이행 등

○발주자가 직불하여야 하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2항 · 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 지급정지 · 파산, 하도급지급대금보증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되고, 하도급자가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산법 제34조제2항 · 하도급법 제13조의2)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보증대상금액은 하도급대금의 4개월분(선급금 제외)
  * 지급주기가 4월이하인 경우 전체금액, 지급주기가 2월 이상인 경우 지급주기 2회분

□ 위반시 벌칙(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보증서 미교부)

○(건산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제81조, 제82조)

○(하도급법)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 · 벌금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지정(제76조제1항)
* 「하도급법」위반하여 공정위가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 (참고)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적발(처분)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8
영업정지	30	38	122	67	28	15
과 징 금	46	89	363	542	17	62
계	76	127	485	609	45	77

Ⅲ. 하도급대금 지급개선 관련 추진경과 및 계획

□ 그동안 추진사항

○국토부 및 국토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 운영('06.7~)

○불공정 하도급거래 단속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매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 강화('08.1~)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 신설('08.1~)

*원도급업체의 파산, 대금지급 2회이상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08.1~)

○국토부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연계 · 구축('08. 12)하여 적발 강화('08.12~)

□ 추가 조치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09.1~)

○건설산업정보망의 하도급공사정보망과 보증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하도급 적발 실효성 강화('09.1~)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시행('09.2월말)

- 임금체불,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 및 내부정보에 밝은 현장 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공 15개 건설현장에 30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 소속 · 산하기관 수시 실태점검 실시('09.2~)

○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09.7)

○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現 15일이내) 단축('09.8, 국회제출)

□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중점업무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과 불법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조치는 동 계획상 하나로 추진

  * 대통령 지시('08.12.2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특히,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SOC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금액 집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책임성 확보 및 공사품질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음

Ⅳ.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관련 Q&A

1.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금번 제도시행의 취지는 무엇인지?

□ 정부는 그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법 · 제도적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 실태조사와 단속도 병행해왔음

  * 원도급업체 파산 · 2회이상 대금지급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의무화('08.1), 불공정하도급 실태조사(매년),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06.7~)

□ 다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건설업체가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특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음성적 · 관행적 위반사례 지속)

2. 동 제도 시행으로 원도급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기성공사대금은 건설업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투입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동 금액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함

□ 오히려,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SOC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금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4.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시,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미이행시 2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게 됨

○한편, 부당특약으로 대물변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건산법 개정안 '08.12월 국회제출)

5. 국토해양부外에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한 재정사업의 경우, 동제도 시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 위반업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하여 국토부 소속 지방청 및 산하 공사 · 공단은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6. 현재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민간공사의 경우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 자재 · 납품업체의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를 사전예방할 필요성이 크므로

○3대 건설협회(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수시점검하고, 감사원 ·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여 위법사실 적발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7. 동 제도가 Paper work 증가 등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 동 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15일내)이 공사현장에서 이행되도록 발주자가 적극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

○동 제도의 시행으로 관행화된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가 공공공사부터 선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원도급업체의 채무문제는 업체 차원의 별도 자구 노력으로 해결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문화투쟁

독일정부와 가톨릭교회 사이에 일어난 투쟁을 말한다. 비스마르크는 사제의 정치 비판을 체형으로 억압하고 교회법에 의하지 않은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가톨릭 억압 정책을 폈다. 의회에서의 정쟁은 교회와 국가의 다툼으로 발전하였고 교육을 교회로부터 국가에 넘기도록 했다.

비스마르크는 1873년에 '5월법'을 공포하고 사제의 임명권을 국가가 장악하여 수도사의 학교 경영까지 금하려고 했다. 또한 세속적인 일에 대한 교회의 간섭을 금지했다. 교회의 저항도 격렬해져 가톨릭교도들이 결성한 중앙당이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벌인 끝에 비스마르크도 타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문화투쟁은 종식되었다. 그 뒤 국가의 교육관리가 확립되었고, 중앙당도 온건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 뒤부터 교회와 정부 사이의 권력 투쟁을 두고 문화투쟁이라고 부른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